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2006. 4. 18 : 사천시장 제출

나 2006. 4. 18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23호)

다 2006. 4. 25 :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과장 정대성)

가 제안이유

■ 지방세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고 5만원 이하 주택분 소액재산세 납기 조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공개요청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9조의2)
- 2) 소득할 주민세도 납세지 착오로 인한 수정신고 가능토록 시정기회 부여(안 제22조)
- 3)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토록 단서 신설함(안 제24조의2 제2항제3호)
- 4) 지방세법에서 동일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로 삭제(제25조 삭제)
- 5) 차량공매로 인도받은 차량은 명의이전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자동차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3항)

- 6)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8조제2항)
- 7) 담배소비세 세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함(안 제55조)
- 8) 재산세의 종세로서 재산세 납기와 동일하게 단서를 신설함(안 제90조제2항제3호)

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균호)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회 분할납부에서 7월에 전액 부과토록 단서 조항을 두었으며, 공매된 자동차를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의무 규정과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으로 변경된 경우를 추가 하고,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서
-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채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자 심의 및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신설 조항은 2005. 12. 31자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개정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항은 맞게 추가, 삭제,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